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85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이준석 · 천하람 · 이주영  
임종득 · 유의동 · 김상훈  
안철수 · 김승수 · 최은석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 내받고 있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경유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1호의2, 제32

조의23,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99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가입자식별모듈”이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자를 식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장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내려받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제32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3(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정보의 표시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3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는 국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식별모듈(이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국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
2.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시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

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를 “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로 한다.

5의3. 제32조의2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

제51조의3제1항 중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을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거나 판매자등이 제32조의23제1항을”로 한다.

제99조제5호 중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를 “행위,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 가입자 식별모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별모듈(이하 “국외 가입자식  
별모듈”이라 한다)을 판매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국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

2.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시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  
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  
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국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  
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  
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제50조(금지행위) ① -----  
-----  
-----  
-----  
-----  
-----  
-----



③ (생략)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  
-----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거나 판매자등이 제32조의23제1항을-----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행위,  
같은 항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  
-----